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가단1403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전 문

원고1. A

소송대리인 B

2. B

C

피고C

변론 종결2018. 5. 4.

판결 선고2018. 6. 15.

주 문

1.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3/325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와 2014. 9. 12. 접수 제89793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와 2014. 9. 12. 접수 제897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위 부동산 중 각 1/5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와 2014. 7. 18. 접수 제696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위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와 1979. 6. 15. 접수 제177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위 부동산 중 각 1/2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4.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2항과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문서를 제출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D는 법률상 배우자 E 사이에 원고 A, 피고, 원고 B, F, G를 자녀로 두었는데 D는 2013. 1. 8.에, E은 2013. 7. 18.에 각 사망하였다(이하 D를 '망인'이라 하고, 원고 A, 피고, 원고 B, F, G를 총칭하여 '상속인들'이라 한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은 별지 1 목록 기재 천안시 소재 토지 8필지(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5지분과 별지 2 목록 기재 충남 부여군 소재 토지 7필지(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가 있었다.

다. 2013. 8. 8. 피고의 청구로 이루어진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3느단172 유언증서검인

사건에서 망인 명의의 자필로 작성된 2005. 1. 10.자 권리이양서[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손자인 H(피고의 아들)에게 이양한다는 내용이다. 이하 '이 사건 권리이양서'라고 한다]에 대한 검인절차가 2013. 11. 22. 이루어졌는데, 당시 원고들은 불출석하였다.

라. 위 유언검인조서 정본은 2013. 12. 2. 원고 B에게, 2013. 12. 26. 원고 A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피고가 그 이전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권리이양서를 보여준 적은 없었다.

마. 상속인들은 2014. 9. 12. 이 사건 1 부동산 중 각 13/325(=1/25, 망인 소유의 1/5 지분×각 자녀들의 상속분 1/5) 지분에 관하여 2013. 2.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바. H는 이 사건 권리이양서에 따라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 등기소 2014. 2. 7. 접수 제1744호로 2013. 1. 8.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사. 피고는, I이 1998. 10.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와 2014. 7. 18. 접수 제69698호로 2014.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아.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4 부동산'이라 한다)은 J과 K이 공유하다가 J이 사망하여 2015. 2. 26. J의 상속인들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와 1979. 6. 15. 접수 제17768호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4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는데 피고는 이 사건 4 부동산의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을 감시하고 생활을 통제하면서 강압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이 사건 2 부동산을 증여하도록 하고 2010. 10.경 투병중인 망인을 모시지 아니하고 욕설을 하는 등 패륜행위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2012. 12.경 망인에게 이 사건 권리이양서와 같이 이 사건 2부동산 등을 피고의 아들 명의로 이전해 달라고 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거절하다가 화병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양서는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2012. 12.경 망인의 명의이전 거절로 인하여 유언이 철회되거나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자신의 장모를 시켜 모(母) E를 감시하고 생활을 통제하며 인격을 모독하였고, 그로 인하여 E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반인륜적 행위를 하였으며, 다른 형제들에게 상속포기를 강요하기도 하여 민법 제1004조 제3호(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제4호(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의 상속인의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상속결격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받은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권리양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2012. 12.경 망인의 명의이전 거절로 인하여 유언이 철회되거나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거나 피고가 상속결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상속인 중 상속결격자인 피고의 지분등기로 인하여 원고들의 상속지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의 이 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1/5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고가 상속결격자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한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3 부동산은 망인이 I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데 피고가 이 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문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다829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3 부동산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원고들은 이 사건 3 부동산의 규모와 관리상태,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 명의신탁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대하여 전혀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3 부동산이 망인이 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4 부동산에 관한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4 부동산은 부친인 망인 외 4인이 J, K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문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4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각 1/2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이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4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가 아님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그 등기명의자 지위를 포괄승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4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명의신탁약정서 문서의 제출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판단한 것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4 부동산이 망인 외 4인이 J, K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4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김영희

별지